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협의·조정을 위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단지 규모와 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시기·방법 등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961호)이 '24.10.25일 공포 되어 개정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시·도에서는 개정 내용을 관할 시·군·구 및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하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주요내용 및 Q&A).
2. 대통령령제34961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가이드북.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동주택과장), 부산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 인천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건축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주택과장), 경기도지사(공동주택과장), 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 충청남도지사(주택도시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주택건축과장), 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 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 경상남도지사(건축주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건설주택국주택토지과장), 대구광역시장(주택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건축과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부동산원장

지방시설사무관 **김경** 지방서기관 **강준식**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영아** 전결 2024. 10. 25.
협조자
시행 주택건설공급과-9535 (2024. 10. 25.) 접수 공동주택과-14252 (2024. 10. 25.)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주택건설공급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4899 팩스번호 044-201-5684 / kimk6520@molit.go.kr / 대국민 공개